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시미동, 해평면, 산동면, 칠곡군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 '69. 6. 4 공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건설부 고시 제321호)
- '69. 9. 16 공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건설부 고시 제544호)
- '71. 5. 20 한국전자공업공단 설립(상공부 허가 제178호)
- '73. 8. 25 지방공업 장려지구 지정(건설부 공고 제85호)
- '77. 4. 22 제2단지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건설부 고시 제72호)
- '79. 5. 21 제3단지 산업기지 개발구역 고시(건설부 고시 제179호)
- '79. 8. 3 관리대상 공업단지 면적 공고(상공부 공고 제79-117호)
- '79. 10. 17 제3단지 개발구역 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367호)
- '79. 11. 1 제3단지 조성 실시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392호)
- '82. 10. 29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82-40호)
- '95. 9. 1 제3단지 준공 인가(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공고 제1995-131호)
- '96. 11. 25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 '97. 3. 7 제4단지 개발계획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69호)
- '98. 3. 6 제4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49호)
- '98. 6. 16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50호)
- '99. 1. 7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경북도 고시 제1999-311호)
- '99. 7. 19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79호)
- '00. 7. 13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90호)
- '01. 4. 18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4호)
- '02. 11. 6 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06호)
- '04. 4. 1 개발계획 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85호)
- '04. 6. 28 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7호)
- '04. 12. 27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4-395호)
- '05. 12. 5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5-380호)
- '05. 12. 21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3호)
- '06. 5. 8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149호)
- '06. 8. 6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7-367호)
- '07. 1. 8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 '08. 3. 31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152호)
- '09. 3. 9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9-138호)
- '09. 8. 12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 '09. 9. 30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5호)
- '11. 1. 27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6호)
- '12. 2. 10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호)
- '12. 4. 12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9호)
- '13. 8. 27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98호)
- '13. 12. 20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4호)
- '14. 4. 10 구미2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88호)
- '14. 6. 20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03호)
- '14. 5. 7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36호)
- '14. 12. 1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8호)
- '14. 12. 17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2호)
- '14. 12. 30 구미3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95호)
- '15. 4. 28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3호)
- '15. 7. 8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6호)
- '15. 12. 3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8호)
- '16. 03. 29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39호)
- '16. 12. 23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7호)
- '16. 12. 29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 '17. 07. 26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1호)
- '18. 6. 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1호)
- '19. 5. 7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75호)
- '19. 8. 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4호)
- '19. 11. 6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 '20. 12. 29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76호)
- '21. 4. 30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 '22. 1. 21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호)
- '22. 3. 2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1호)
- '22. 3. 25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0호)
- '23. 2. 23 구미3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경상북도 고시 제2023-53호)
- '23. 6. 2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9호)
- '23. 7. 14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04호)
- '23. 11. 13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5호)
- '23. 12. 29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고시 제2023-957호)
- '24. 07. 05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6호)
- '24. 10. 2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 '25. 01. 22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7호)
- '25. 04. 10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25-141호)
- '25. 06. 05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1호)
- '25. 12. 15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9호)
- '26. 01. 14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2호)
- '26. 01. 12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26-12호)
- '26. 05. 15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42호)
- '26. 06. 04 구미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2026-209호)

○ '26. 07. 03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72호)

다.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임대)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실적)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28,010	16,143	129	5,001	5,130	21,273		
산업시설구역	19,671	14,859	19	4,793	4,812	19,671	1969 ~ 2028	경 상 북 도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지원시설구역	1,483	1,266	9	208	217	1,483		
공공시설구역	4,816	-	-	-	-	-		
녹 지 구 역	1,921	-	-	-	-	-		
복 합 구 역	119	18	101	-	101	119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3호에 따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함.

라.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2025. 9월	2,904	96	3,000	18,731	966	19,697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시설명	2019. 4월 현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 국도			
	- 5호선(마산-중간진)			
	- 33호선(고성-구미)			
공 항	- 25호선(진해-청주)			
	- 67호선(칠곡-구미)			
	○ 대구공항(40km)			
	○ 김해공항(148km)			

용 수	○ 공업용수 : 300천m³/일 ○ 생활용수 : 200천m³/일 ○ 4단지 취수장 - 관로 : L=18.6km (D=600~1100mm) - 용량 : 64천m³/일 (2004년 1단계 준공)			
전 력	○ 변전소 5개소 - 시설용량 : 765MVA		○ 변전소 1개소 추가 - 시설용량 미정	한국전력 공 사
통 신	○ 전화 회선수 : 60,400회선	-	-	-
환 경	○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 용량 : 330천m³/일 - 처리량 : 245천m³/일 ○ 확장단지 하수처리시설 - 용량 : 14천m³/일 ○ 유수지 1개소 : 218천m³	2004 ~ 2019	○ 유수지 2개소 추가 : 28천m²	한 국 수자원 공 사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 목적

- (1)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민경제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
- (2)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의 반도체, 컴퓨터 산업의 산업기반 확충
- (3)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 기술산업 육성

나. 관리기본 방향

-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
- (2) 기존단지와 제4단지 입주업체간의 전문화, 계열화 유도
- (3) 환경보존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디스플레이, 자동차,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 의류, 음식료, 정밀화학, 차

세대IT, 환경서비스

- 나) 성장산업 :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플랜트, 화학,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 의약, 정밀화학, 첨단의료기기
- 다) 주력산업 : 디지털기기부품산업, 모바일융합산업, 에너지소재부품산업, 성형가공산업,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

- 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 나)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관련 수출업체
- 다)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일반수출업체
- 라) 중견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대상업체
- 마) 기계장비 및 전기기기 관련 제조업체
- 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 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 차)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m²,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28,010,235.1 (100.0)	19,670,959.0 (70.2)	1,482,646.0 (5.3)	4,816,094.3 (17.2)	1,921,142.0 (6.9)	119,393.8 (0.4)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m²)

구 분	총 면 적	R&D 및 산업클러스터	연구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면 적	965,899	102,686	340,180	322,304	200,729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별첨#2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제1, 2, 3단지에 한함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레미콘(23322), 아스콘(23991), 도금업(25922)은 제외하며, 기타 환경 및 용수 등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2)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산업기술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제4단지에 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6개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업 종 구 분		입 주 대 상 업 종
가 공 조립형	25.금속가공제품	251. 구조용금속제품,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 252. 무기및총포탄제조업(25200 무기및총포탄제조업) 259.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도금공정 포함업종 제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업종 (26600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은 염색공정포함시 제외)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업종 (도금및도장공정포함업종 제외)
	28.전기장비	전업종
	29.기타 기계장비	전업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업종
자 원 입지형	10.식료품	105.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106. 곡물가공품,전분및전분제품제조업(10620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제외) 107. 기타식품제조업(1071. 떡,빵및과자류제조업 1073. 면류,마카로니 및유사식품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제외)
	12.담배	전업종
	13.섬유제품	132. 식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중 1321 직물직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 표백,염색,나염공정 포함업종 제외 133.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중 1331. 편조원단제조업,1332 편조제품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전업종
	17.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3.비금속광물제품	231.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표면처리 또는 도금공정 포함 제외) 239.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91석제품 제조업, 2399중 23991 아스콘제조업 제외) 23999. 그외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아스팔트성형 제품 제외)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염색공정 포함업종 제외
	24.1차금속	243. 금속주조업
기 초 소재형	32.가구	320. 가구제조업
소 비 입지형	33.기타제품	331. 귀금속및장신용품제조업, 332.악기제조업 333.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334. 인형,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339. 그외기타제품(3399.그외기타분류안된제품제조업중 도금 및도장공정 포함업종 제외)
비 고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으로 중분류를 달리하는 31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910전투용 차량제조업)은 중전기준에 따라 입주 허용	

- 1) 단, 입주기업체가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생산시설 및 공정의 추가 또는 변경 없이 부수적으로 생산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 및 용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 업종구분에 있는 업종범위 내에서 업종추가를 허용할 수 있음
-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1호('18.6.1) 시행 이전에 입주한 1712 업종(종이 및 판지 제조업)은 위 입주대상업종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위 및 기존설비 처분 가능(단, 신규 입주계약 불가)
- 다) 확장단지 내 산업클러스터 및 R&D용도 시설에 한함
- 1) 연구개발업 중 아래의 입주업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업 종 구 분		입 주 대 상 업 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2)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중 아래의 입주업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업 종 구 분		입 주 대 상 업 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 산업 단체

- 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한함

업 종 구 분	입 주 대 상 업 종
전자·정보기기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신소재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친환경(하이브리드)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 (제한업종계획구역에 탄소가 융합된 제조업과 일부 부품이나 소재를 탄소제품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계획 포함)	○ 입주대상업종 세부내역은 (별표#6) 참조
기타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1구역, 3-1구역에 한함)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1구역, 3-1구역에 한함)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5구역에 한함)

* 상기업종코드 중 주물, 레미콘, 아스콘업종은 제외 함.

* 용수다소비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20129 양극활물질 제조와 20499 음극활물질 제조는 업종별 배치계획상 2-1구역 및 3-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

*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유치업종 배치계획 상 4-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가능하고,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통신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사 책임 처리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 7153, 751, 759, 941 (R&D 및 산업클러스터 용도에 한 함)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8~59, 61~63, 70, 71531, 729, 732, 73902, 75992, 75994 (연구시설용도에 한 함)

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아)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3) 화물터미널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913 업종(물류시설용도에 한함)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차) 부동산 임대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최초 분양에서 제외)

1)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 함)
- 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자
- 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
- 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
- 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 다)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 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 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지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 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과)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하)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업종별 배치기준

- 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 나) 제1단지 중 전자단지는 초정밀 기술집약형 전자기기부품 관련 업종을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섬유업종 집산화단지는 점차적으로 전자기기 관련 및 기계장비 업종으로 전환배치
- 다) 제2단지는 컴퓨터 등 산업용 전자업종과 중소전자부품, 기계장비 관련 공장을 배치하여 기존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촉진도모
- 라) 제3단지는 고도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대규모의 첨단기술산업 및 제1·2단지의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배치
- 마) 제4단지는 제1·2·3단지 입주업체와 전문화, 계열화 단지로 육성
- 바) 하이테크 산업단지는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 및 협업화 체계가 가능토록 배치
- 사)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 아)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4)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면 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합 계		19,688	3,000	
공장 시설 용도	소 계	18,722	2,904	
	음·식료	125	22	10
	섬유의복	1,659	135	13~14
	종이·목재	222	50	16~17, 32
	석유화학	2,413	268	20
	비금속	851	36	23
	1차 금속	201	41	24
	기 계	1,650	1,065	25, 29
	전기·전자	6,075	787	26~28
	운송장비	376	56	30~31
	기 타	1,068	343	위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
	1 구 역	2,009	0	26~29
	2 구 역	744	41	23, 24, 26, 27, 28, 29, 30
	2-1구역	121	2	23, 24, 26, 27, 28, 29, 30, 20129, 20499
	2-2구역	68	1	63
	3구역(제한업종계획구역)	739	52	제한업종 (10~12, 16~19, 25)
	3-1구역(제한업종계획구역)	181	1	제한업종 (10~12, 16~19, 25) 20129, 20499
	4구역	164	3	35
	4-1구역	39	1	63

	5구역	17	1	20
	소 계	966	96	
	R&D 및 산업클러스터	103	0	701, 7153, 751, 759, 941
특정 용도	연구시설	340	91	58~59, 61~63, 70, 71531, 729, 732, 73902, 75992, 75994
	폐기물처리시설	322	4	382, 383(금전동 839)
	물류시설	201	1	52

(5)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3, 별첨#4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도구분	세부용도 (시설명)	면 적	필지수
	합 계	1,440	470
특정용도	소 계	453	10
	구미전자공고	256	1
	한국폴리텍대학	68	1
	변 전 소	101	6
	산업가스안전관리센터	11	1
	자동차정류장	17	1
일반용도	소 계	987	460
	관리기관 청사	12	1
	구미세무서	31	1
	중소기업지원센터	15	1
	근로청소년 회관	46	4
	유통단지	55	1
	운동시설	24	1
	주유소	6	3
	충전소	2	1
	주차장	39	9
	기타 지원시설	757	438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공회당,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마. 동·식물원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구도고도화사업 등 관리권자의 승인을 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9) 제17호에 따른 공장

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숙사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산업집적법」 시행 이전,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된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 할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나)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바. 복합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법 제2조제18호의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 (2)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3,300㎡ 이상으로 함.
- (3)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
- (4) 입주기업체가 타사부지에 기설치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유통·공급시설 중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에 한한다.)을 사용할 목적으로 타사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경우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다만, 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
- (5) 상기의 (4)에 따라 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한 필지를 기존공장과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
- (6)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한도

○ 입주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라. 국민임대단지 조성운영

- 제4단지에 1,402천㎡ 규모의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

마.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 운영

- (1)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산업진흥전략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4단지 107천㎡를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로 지정
- (2) 구미단지의 디지털 전자정보통신기기 기술혁신 거점화와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바. 환경관리

-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사. 안전관리

-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아.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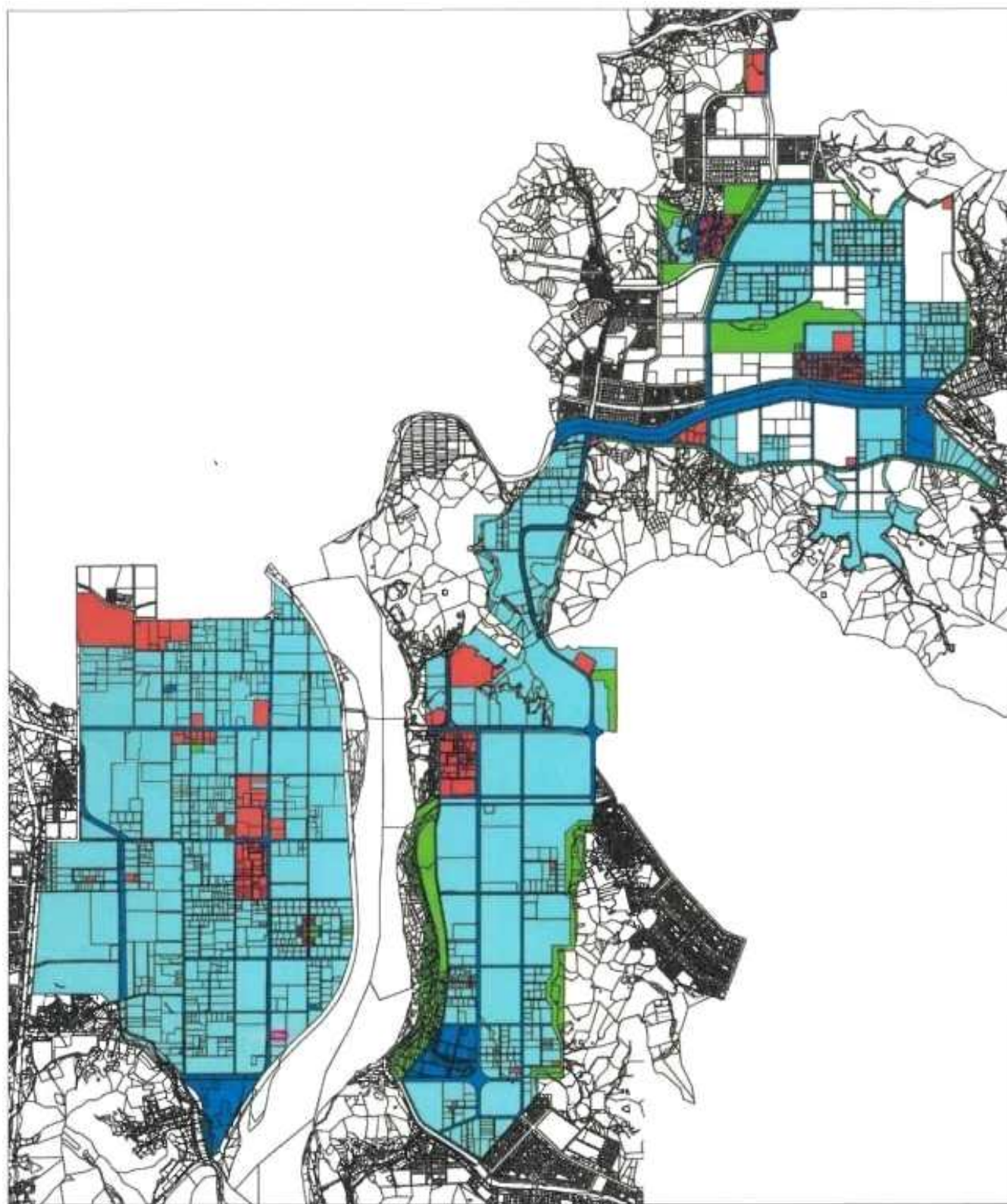
- (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 (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

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공장 지붕, 유희부지(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에 한함),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체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유도
- (2) 입주기업체에 AI·IoT 기술을 활용한 공장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에너지 수요·공급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기반 플랫폼 구축 도모
- (3) 친환경 공정 전환, 설비 고효율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 에너지 구조 혁신 도모
- (4) 입주기업 간 에너지공동체 형성 등 에너지 협력모델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별첨#1) 구미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구미국가 제1~4단지, 확장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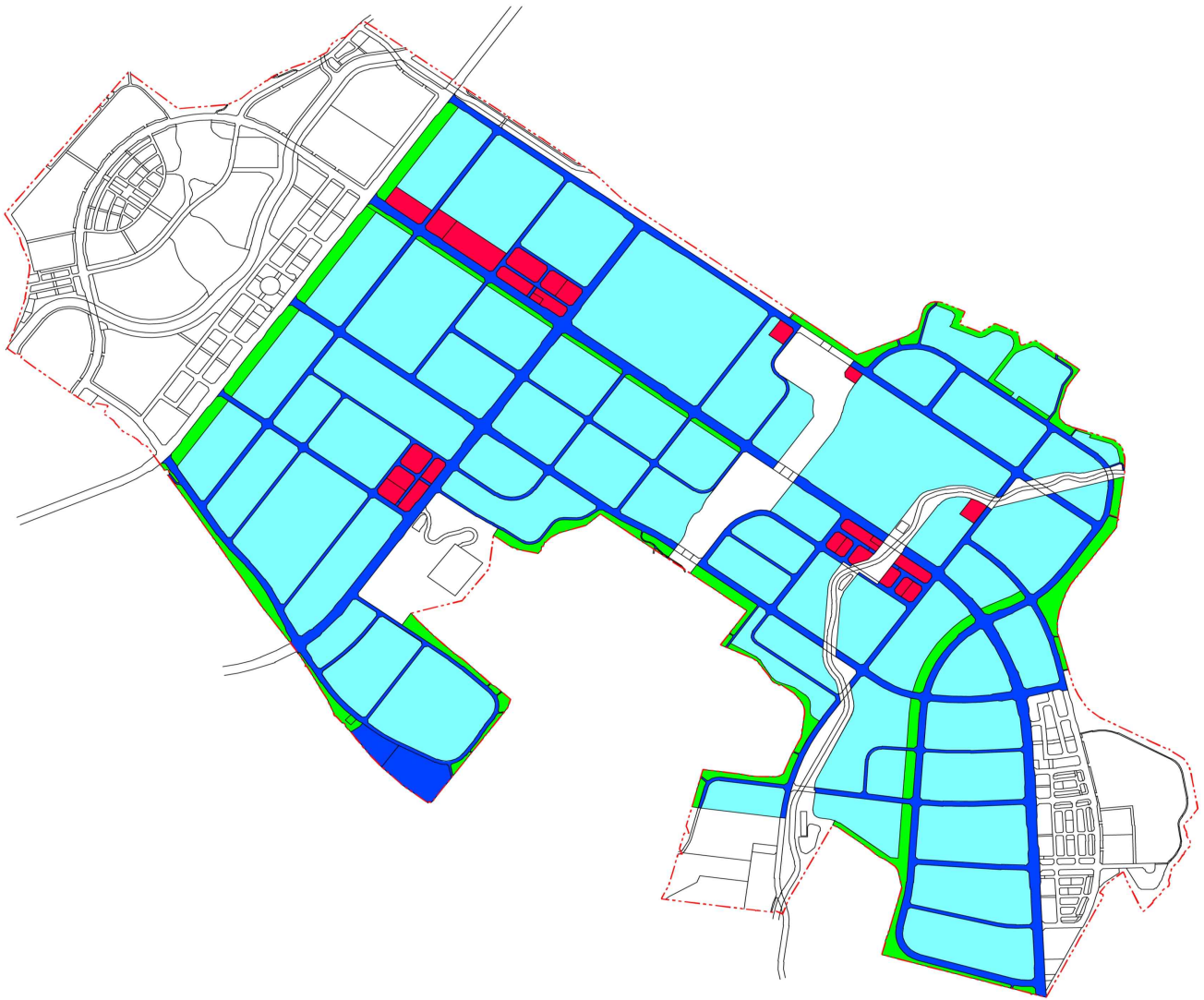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제1~4단지, 확장단지 -

용도별 구역 평면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복합구역

(별첨#2) 구미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하이테크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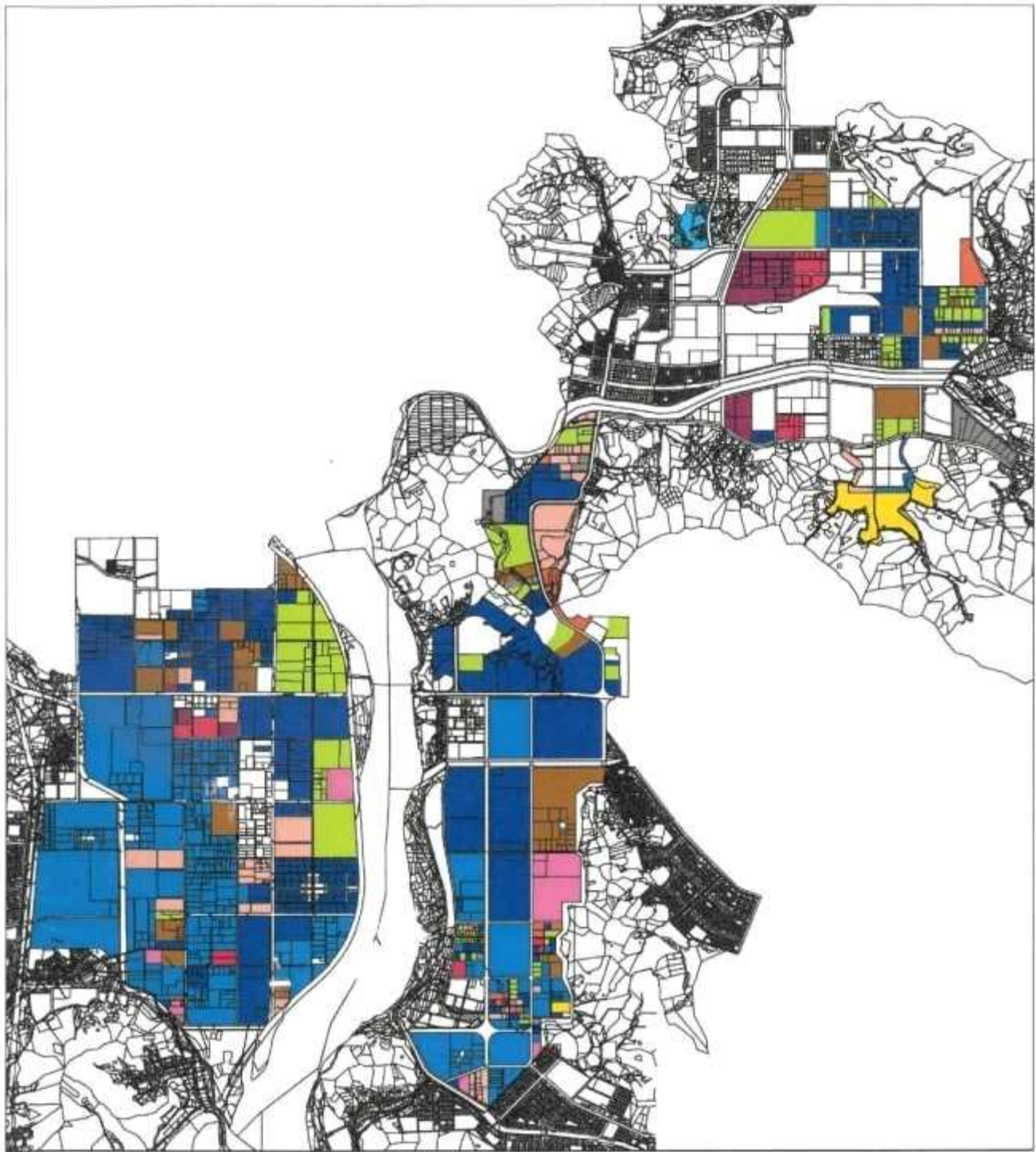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하이테크밸리 -

용도별 구역 평면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별첨#3) 구미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구미국가 제1~4단지, 확장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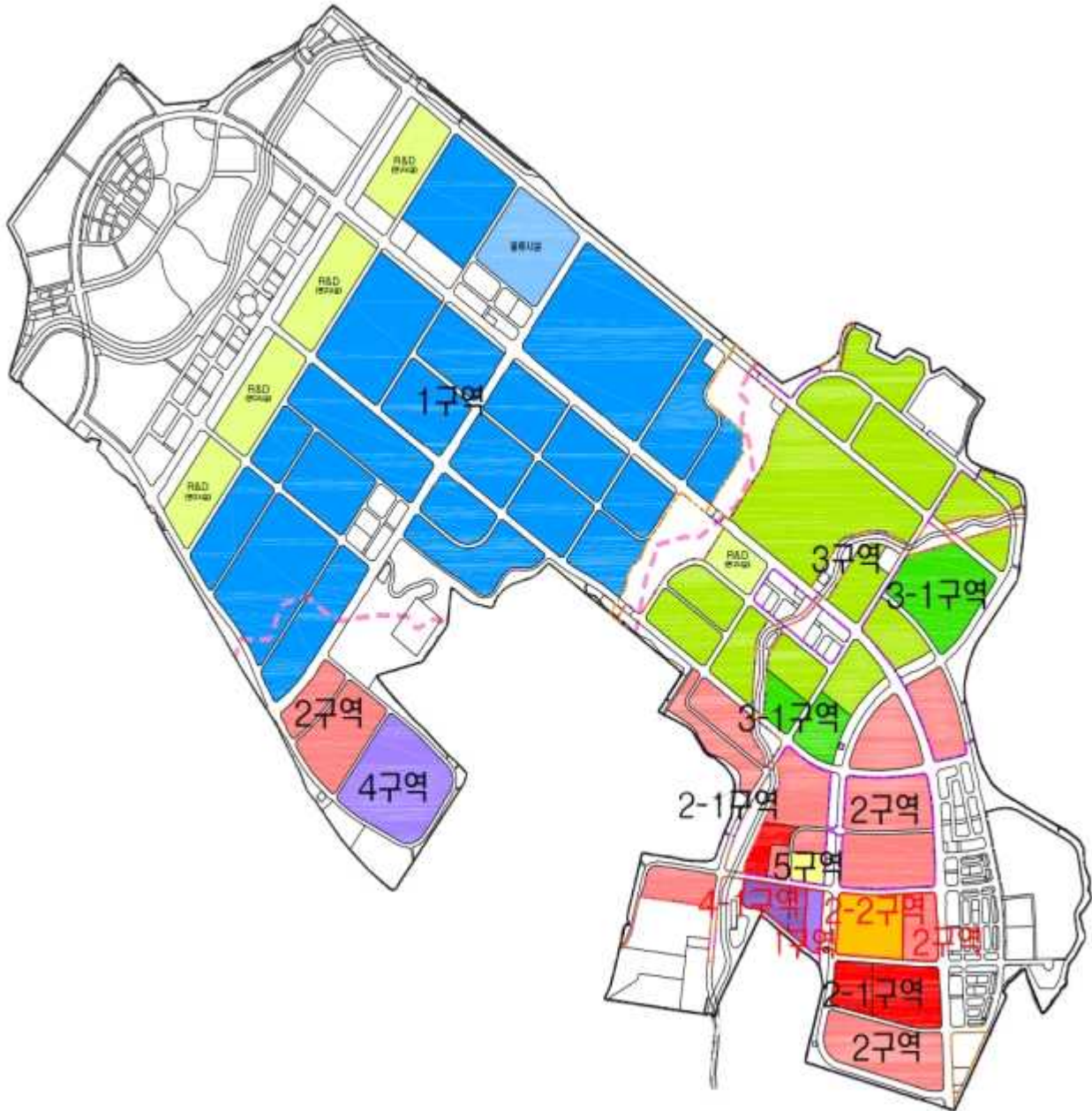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제1~4단지, 확장단지 -

업종별 배치 계획도

음식료품	제1 차금속	폐기물처리시설
석유화학	기계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비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별첨#4) 구미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하이테크밸리)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하이테크밸리 -	1구역	폐수배출제한구역(C26, 27, 28, 29)
	2구역	C23, 24, 26, 27, 28, 29, 30
	2-1구역	C23, 24, 26, 27, 28, 29, 30, C20129, C20499
	2-2구역	J63
	3구역	제한업종계획구역(C10~12, C16~19, C25)
	3-1구역	제한업종계획구역(C10~12, C16~19, C25, 포함:C20129, C20499)
업종별 배치 계획도	4구역	D35
	4-1구역	J63
	5구역	C20
	R&D(연구시설)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별첨#5) 추가 지정단지 용도구역별 면적표

□ 확장단지

구분		토지이용계획		관리기본계획		
		면적 (㎡)	구성비 (%)	관리구역		제외구역
				면적(㎡)	구성비(%)	면적(㎡)
합계		2,476,244.0	100	508,856.3	100.0	1,967,387.7
산업시설용지		102,686.0	4.1	102,686.0	20.2	
복합용지		101,098.0	4.1	101,098.0	19.9	
주거 시설 용지	소계	816,390.0	33.0			816,390.0
	단독주택	220,576.0	8.9			220,576.0
	공동주택	566,547.0	22.9			566,547.0
	근린생활시설	29,267.0	1.2			29,267.0
상업시설용지		66,282.0	2.7			66,282.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83,115.0	23.5	47,837.3	9.4	535,277.7
	교육시설	109,065.0	4.4			109,065.0
	주차장	15,918.0	0.6			15,918.0
	도로	435,376.0	17.6	43,952.0	8.6	391,424.0
	보행자도로	18,187.0	0.7			18,187.0
	중계펌프장	2,819.0	0.1	2,814.3	0.6	4.7
	전력공급설비	1,750.0	0.1	1,071.0	0.2	679.0
녹지 구역	소계	591,088.0	23.9	206,675.0	40.6	384,413.0
	공원	284,164.0	11.5	144,178.0	28.3	139,986.0
	녹지	306,924.0	12.4	62,497.0	12.3	244,427.0
지원 시설 용지	소계	215,585.0	8.7	50,560.0	9.9	165,025.0
	공공시설	13,359.0	0.5			13,359.0
	업무시설	8,775.0	0.4			8,775.0
	유통단지	50,560.0	2.0	50,560.0	9.9	
	도서관	5,000.0	0.2			5,000.0
	종교시설	9,829.0	0.4			9,829.0
	주유소	1,500.0	0.1			1,500.0
	통합지원시설	126,562.0	5.1			126,562.0

□ 하이테크밸리

구분		토지이용계획		관리기본계획		
		면적 (㎡)	구성비 (%)	관리구역		제외구역
				면적(㎡)	구성비(%)	면적(㎡)
계		9,324,747	100	6,282,415	100.0	3,043,568
산업 시설 구역	소계	4,676,304	50.3	4,676,304	74.4	
	생산시설	4,084,201	43.8	4,084,201	65.0	
	연구시설	340,180	3.7	340,180	5.4	
	물류시설	200,729	2.2	200,729	3.2	
	폐기물처리시설	51,194	0.6	51,194	0.8	
지 원 구 역	소계	1,419,778	15.1	180,079	2.9	1,239,699
	주거용지	889,671	9.5			888,671
	공동주택	754,562	8.1			754,562
	단독주택	105,477	1.1			105,477
	근린생활시설	29,632	0.3			29,632
	업무시설	30,746	0.3			30,746
	상업시설	82,685	0.9			82,685
	상업(주상복합)용지	57,765	0.6			57,765
	지원시설	96,386	1.0	96,386	1.5	
	공공지원시설	262,525	2.8	83,693	1.3	178,832
	교육시설	112,764	1.2			112,764
	종교시설	5,998	0.1			5,998
	운동시설용지	24,487	0.3	24,487	0.4	
	유통시설	19,374	0.2			19,374
	공공청사	11,144	0.1			11,144
	주차장	57,050	0.6	28,248	0.4	28,802
	주유소	6,251	0.1	5,501	0.1	750
	자동차정류장	13,802	0.1	13,802	0.2	
	변전소	11,655	0.1	11,655	0.2	
공 공 구 역	소계	1,716,133	18.4	1,008,332	16.1	707,801
	도로	1,392,367	14.9	950,207	15.1	442,160
	보행자도로	28,023	0.3	2,352	0.04	25,671
	광장	8,350	0.1			8,350
	하천	155,737	1.7			155,737
	폐수종말처리시설	(60,085)	0.0			(60,085)
	폐수중계펌프장	897	0.0			897
	오수중계펌프장	584	0.0			584
	배수지	24,523	0.3			24,523
	가압장	2,241	0.0			2,241
	저류시설	103,314	1.1	51,566	0.8	51,748
	농업용수공급시설	97	-			97
녹 지 구 역	소계	1,512,532	16.2	421,907	6.6	1,090,625
	공원	514,630	5.5			514,630
	녹지	997,902	10.7	421,907	6.6	575,995

(별첨#6)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내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

중분류	중분류명	소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	세세분류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5)	13101	면 방직업
				13102	모 방직업
				13103	화학섬유 방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직업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0)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9	특수 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 원단 제조업 (1)	13300	편조원단 제조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8)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 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9)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4)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 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4)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3)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중분류	중분류명	소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	세세분류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3)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3-1구역만 가능)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4)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3-1구역만 가능)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5	화학섬유 제조업 (2)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6)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1	고무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7)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5)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2)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4)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중분류	중분류명	소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	세세분류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4)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